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잘못 인용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과 명칭이 변경된 법령을 조례안에 반영하고, 포괄위임입법 금지, 예산총계주의 등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, 반영하여 현 시점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이 잘못 인용된 조항 수정
(안 제5조, 제17조, 제25조제1항)

○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(안 제6조)

○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조항 삭제(안 제11조)

○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 및 법령명칭 변경사항 반영
(안 제19조의2, 제22조의3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제4항, 제30조, 제32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63조, 제63조의2, 제66조)

○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 삭제(안 제38조제2항～제5항, 제6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, 외국인투자 촉진법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23.～2018. 9.11.)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 - 5993(2018. 8.10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 - 45298(2018. 8.13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내용, 용어 변경 등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총칙,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행정재산 관리·처분, 일반재산의 대부·매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